

아리수앳 환경을 품다, 수돗물앳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서울교통공사사장(기계처장)
(경유)

제목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하수도사용료 이중부과' 여부 관련 질의에 대한
담당부서 검토의견 회신

1. 귀 기관(부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교통공사 기계처2226(2017.9.20.)호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주관부서인 물재생계획과의 검토의견을 붙임1.과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서울교통공사 질의 요지

가. 질의 배경 및 현황(붙임1. 내용 중 설비 계통도 참조)

1) 서울교통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우리시 지하철 1~4호선의 역사에서는 상수도로 역사 내 생활용수(샤워실, 역사 내 상가, 역사 물청소)와 화장실 용수를 사용하고 있고, 그와 별도로 승강장 하부에서는 유출지하수가 발생하고 있음

2) 서울 지하철 1~4호선의 역사는 건설 당시부터 유출지하수 집수정과 역사 내 발생하는 생활하수의 집수정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지 않아, 역사 내 발생하는 생활하수가 배관을 통해 유출지하수 집수정으로 집수되도록 연결되어 있고, 화장실 용수는 오수정화조를 거쳐 별도의 배관을 통해 직접 공공하수도로 배출되고 있음

3) 하수도사용료 부과 기준이 되는 사용량은 상수도 전체 사용량과 연계되므로, 지하철 역사 내 생활하수의 경우 1차적으로 상수도 계량기 측정량에 대해 하수도사용료가 부과되는데, 이후 유출지하수 집수정으로 집수되어 유출지하수와 함께 계량되어 2차적으로 유출지하수 하수도사용료가 별도로 부과되고 있으므로, 하수도사용료 이중부과의 문제가 존재함

나. 질의 요지

1) 현재 전체 상수도 사용량 중 화장실 전용 사용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량기가 별도 설치되어 있으므로, 전체 상수도 사용량 중 화장실 전용 사용량을 제외한 나머지 양을 유출지하수 집수정에 집수되고 있는 역사 내 생활하수량으로 간주하여, 그 양 만큼을 집수정에서 모터로 펌핑되어 공공하수도로 배출되는 전체 유출지하수 하수도사용료 부과량에서 제외하는 방식이 가능한지 여부

2) 만약 1)의 방식으로서의 제외가 불가능하다면 가능한 방식 제시를 요청함

붙임 1. 질의에 대한 담당부서(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검토의견 1부. 끝.

서울특별시



협조자

시행 물재생계획과-13126 (2017.1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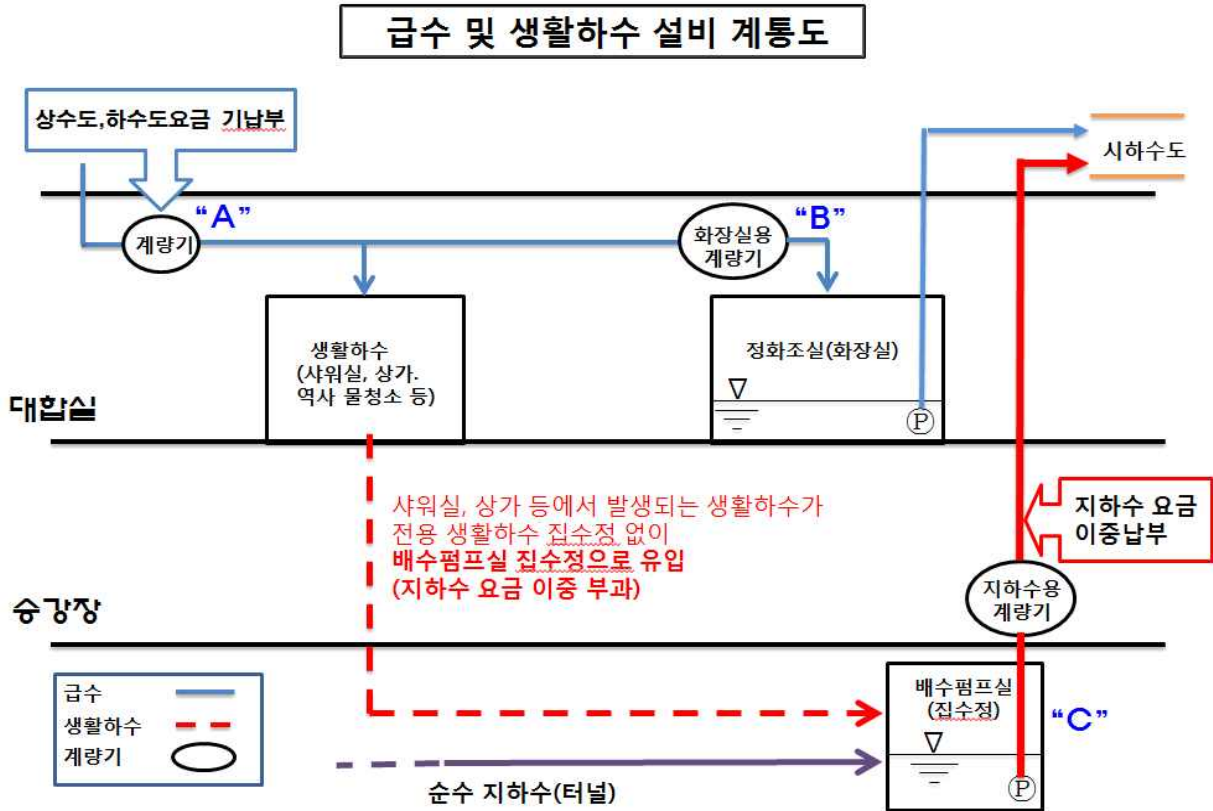
접수 기계처-2483 (2017.10.10.)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별관 1동 8층/

전화 전송 / / 부분공개 (5)

<질의에 대한 담당부서 검토의견>

□ 지하철 1~4호선 역사 급수 및 생활하수 설비 계통도



□ 주관부서(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검토 의견

- **생활하수 배출량에 대한 하수도사용료 이중(중복) 부과인지 여부에 대한 검토**
 - 상수도 급수부분에 설치된 계량기에서 계측된 전체 상수도사용량(A)에 대해 1차적으로 하수도사용료가 부과되는 상황에서,
 - 그 전체 상수도 사용량 중 일부분인 역사 내 생활하수가 배관을 통해 지하철 승강장 지하 부분에 매설되어 있는 유출지하수 집수정으로 유출지하수와 함께 집수되어 배수펌프의 가동을 통해 공공하수도로 최종 배출되는 과정에서 그 전체량(역사 내 생활하수 배출량+유출지하수 배출량)에 대해 2차적으로 유출지하수 하수도사용료가 부과되고 있다면,
 - 전체 유출지하수 하수도사용료 부과량 중 '역사 내 생활하수 배출량'에 대해서는 하수도사용료 이중(중복)부과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 '역사 내 생활하수 배출량' 에 대한 합리적 측정방식 제시

- 1차적으로, 만약 유출지하수 집수정으로 집수되는 '역사 내 생활하수'에 대해 집수정 인입부분에의 계량기 설치로 그 정확한 유입·집수량의 측정이 가능하다면 그것이 가장 정확하고 합리적인 측정방식이 될 수 있을 것임
- 만약 위의 1방식에 의한 정확한 유입·집수량 측정이 불가능한 현장 상황이라면 2차적으로는, 서울교통공사에서 적용가능 여부를 질의한 방식처럼 전체 상수도 사용량에서 화장실용 계량기에서 측정된 화장실 용수 사용량을 제외한 양을 '역사 내 생활하수' 량으로 간주하고, 유출지하수 집수정에서 배수펌프 가동을 통해 배출되는 전체 공공하수도 배출량에서 '역사 내 생활하수'량 만큼을 공제한 후의 순수한 유출지하수의 공공하수도 배출량에 대해서만 유출지하수 하수도사용료를 부과하는 방식도 인정 가능하다고 판단됨

※ 즉, 위 설비 계통도에서 '지하철 역사 전체 상수도 사용량(A)에서 화장실 용수 전용 계량기 측정량(B)을 제외한 양(A-B)'을 '역사 내 생활하수' 사용량으로 간주하고, 집수정에서 배수펌프를 사용하여 공공하수도로 배출되는 전체량(C, 역사 내 생활하수량+순수한 유출지하수량)에서 '역사 내 생활하수량'을 제외한 '순수한 유출지하수량' 즉 'C-(A-B)'에 대해서만 유출지하수 하수도사용료를 부과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음 (단, 이러한 방식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화장실 용수 전용 계량기 측정량인 B가 정확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므로, B를 측정하기 위한 계량기는 반드시 담당 공무원(해당 역사 소재 자치구의 지하수업무 담당 공무원)의 입회하에 설치되고 봉인되어야 하고,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6조제2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계량기여야 함)

○ 관련 자치법규(조례·규칙) 검토

- 하수배출량의 인정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4조(하수배출량의 인정)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위한 하수배출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개정 2016.5.19.>

1. 공공하수도 사용자가 상수도 사용자(사설상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상수도 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2. (중략)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른 경우에는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신고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4. 공공하수도 사용자가 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도 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양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 하수배출량의 조사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5조(하수배출량의 조사)

- ① 시장은 제24조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인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 계측기의 설치 및 관리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6조(계측기의 설치 및 관리)

- ① (중략)
- ② 제1항에 따라 계측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된 계측기는 시장에게 봉인 요청을 하여 봉인하여야 한다.
 1. 공인검정기관의 검정을 받은 것
 2. 검정유효기간이 넘지 않은 것
 3. 파손되거나 고장나지 않은 것
- ③ 시장은 하수도 사용자가 설치한 계측기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공인검정기관에 기능시험을 의뢰할 수 있으며, 검정에 필요한 비용은 하수도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④ 하수도 사용자는 계측기 점검 또는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적치하거나 공작물 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 하수도사용료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35조(이의신청)

- ① 사용료·점용료·원인자부담금 또는 그 밖에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납부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결정·통지하여야 한다.
- ③ (생략)
- ④ (생략)

- 본 사례에 대한 관련 자치법규 조항 적용 여부 검토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34조(감면)

- ① 시장은 공익 등을 고려하여 하수도 사용자의 사용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한다.
<개정 2009.7.30., 2011.7.28., 2016.5.19., 2016.9.29.>
- 1~3. (생략)
4. 제빙업·빙과류제조업·청량음료제조업·주류제조업·시멘트가공업 또는 철도역 등에 사용한 물의 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이 제21조제1항제4호에 해당되어 신고한 경우 : 그 차이량에 대하여 면제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1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 ① 공공하수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하수배출량 등에 대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행위를 하거나 상황이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11.>
- 1~2. (생략)
3.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지하수·하천수·온천수 또는 해수 등을 공공하수도에 배출시킬 때
4.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5. 그 밖에 배출되는 하수의 현황이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요금의 적용구분과 달라졌을 때
- ④ 조례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신고는 주류제조업, 제빙업, 청량음료제조업, 시멘트 가공업 등과 같이 물의 사용량과 배출량이 30퍼센트 이상의 차이가 나는 사용자의 경우에 한한다.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8조(신고)

- ① 조례 제21조에 따른 사용개시 등의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업종변경에 한함)에 따른 신고 중 상수도사용 및 지하수의 계속사용으로 인한 경우에는 관할 서울특별시수도사업소장(이하 "수도사업소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앞에서 제시한 1방식 또는 2방식을 통해 계측되는 '역사 내 생활하수량 (A-B)는, 그 전량이 유출지하수 집수정으로 유입·집수되어 배수펌프를 사용하여 공공하수도로 배출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본 건은 상수도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의 차이에 따른 하수도사용료 감면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34조제1항제4호에 해당되는 문제라기보다는, 같은 조례 제24조와 제2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수배출량의 인정 (제24조제4호)'과 '그 인정된 하수배출량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의 담당공무원의 조사 및 그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조정(제25조제1항 및 제3항)'의 문제라고 할 것임.

또한 본 건이 같은 조례 제34조제1항제4호의 감면의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이상, 마찬가지로 그와 관련된 규정인 같은 조례 제21조제4항의 '물의 사용량과 배출량이 30퍼센트 이상의 차이가 나는 사용지의 경우에 한한다.'는 단서조항 역시 본 사례에의 적용이 배제되어야 함.

따라서 서울교통공사는 해당 역사별로 유출지하수 집수정에서 배수펌프를 사용하여 공공하수도로 배출되는 전체 하수량 대비 '역사 내 생활하수량'의 비율이 실사 30퍼센트 미만이라 할지라도, 계측된 '역사 내 생활하수량 부분(A-B)에 대해서는 전량 유출지하수 하수도사용료를 감면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 조리 상 타당하다고 할 것임

□ 담당부서 검토의견(소결)

- 본 사례에서, 전체 유출지하수 하수도사용료 부과량 중 '역사 내 생활하수 배출량'에 대해서는 하수도사용료 이중(중복)부과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 따라서 서울교통공사는 각각의 역사에 대해 위에서 제시한 1방식, 또는 2방식을 통해 승강장 지하에 위치한 유출지하수 집수정으로 유입되는 '역사 내 생활하수'의 양이 결정되는 경우, 집수정에서 배수펌프를 사용하여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전체 하수량에서 결정된 '역사 내 생활하수'량 만큼을 제외한, 나머지 순수한 유출지하수량에 대해서만 유출지하수 하수도사용료를 납부하면 된다고 판단됨
- 다만 그 경우에 1방식 또는 2방식을 통해 계측되는 '역사 내 생활하수'량 (A-B)는, 그 전량이 유출지하수 집수정으로 유입·집수된 후 유출지하수와 함께 배수펌프를 이용하여 공공하수도로 배출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서울교통공사가 조정 받을 수 있는 하수도사용료는 A에서 계측되는 급수량에 대한 '공공용 하수도사용료'가 아니라, C에서 계측되는 배출량에 대한 '유출지하수 하수도사용료'임

- 이 경우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1조제4항의 ‘물의 사용량과 배출량이 30퍼센트 이상의 차이가 나는 사용자의 경우에 한한다.’는 단서는 적용을 배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서울교통공사는 각 역사별로 유출지하수 집수정에서 배수펌프를 사용하여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전체 하수량 대비 ‘역사 내 생활하수’량의 비율이 설사 30퍼센트 미만이라고 할지라도, 계측된 ‘역사 내 생활하수’량에 대해서는 그 전량에 대해 유출지하수 하수도사용료를 조정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임

□ 본 사례 업무처리절차에 대한 검토

- 이러한 하수도사용료의 조정을 위해서는 서울교통공사가 하수도사용료 부과 징수업무의 수탁기관인 해당 역사 소재지별 관할 수도사업소에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35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해야 하며,
 -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관할 수도사업소는 해당 지하철 역사 소재지 관할 자치구의 유출지하수 담당자에게 현장조사를 요청하여야 하고,
 - 관할 수도사업소의 요청을 받은 해당 자치구 유출지하수 담당자는 앞의 1또는 2의 방식으로 ‘역사 내 생활하수’량을 측정하기 위한 계측기 설치 시 현장에 출장하여, 설치되는 계측기가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6조제2항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계측기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봉인조치 한 후 관할 수도사업소로 계측기 설치 및 봉인을 완료하였음을 통지해야 함
 - 자치구 담당자의 통지를 받은 관할 수도사업소는 설치된 계측기를 통해 ‘역사 내 생활하수’량을 점검한 후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및 신청인에게의 통지를 완료해야 함
- ※ 만약 이의신청이 인용되어 하수도사용료가 조정될 경우, 관할 수도사업소는 이의신청된 해당 이중(중복)납부 하수도사용료를 환급하고, 결정이 통지된 날 이후 최초의 월 정기 검침분에 대한 하수도사용료 부과부터는 그러한 이중(중복)부과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이의신청이 없었던, 결정 통지 이전 기 납입 유출지하수 하수도사용료에 대한 소급적용은 불가함)